

2023 약학대학 규정 및 요람

(편입학-2+4년제)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목 차

약학대학 연혁 및 소개	1
교육목표	4
약학대학 기구	7
약학대학 학사운영규정	8
제위원회 규정	20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2
학업성적 평가 내규	23
장학금 지급 규정	26
약학대학생 실무실습 지침	28
연구실 심화실무실습 운영내규	33
약학과 실무실습비 운영 규정	35
실무실습 교과과정	36
학부 교육과정 연계도	39

약학대학 연혁 및 소개

약학은 인간의 건강증진과 위생, 특히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는 물질에 관하여 연구하는 응용과학이다. 이러한 학문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약학과는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의 기초과학을 근간으로 하여 의약품의 취급에 관련된 제반 분야를 다루기 위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약학과에서는 원료 의약품의 합성, 의약품 및 그 제제 개발, 의약품 개발 정보 관리, 생리 활성 물질의 성질과 생체 내에서의 작용, 의약품의 배합,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 등에 관한 정보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에 관하여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약학과는 1978년 10월에 교육부(당시 문교부)인가를 받아 1979년 3월에 30명의 신입생을 처음 선발하였다. 약학전문교육을 통하여 고급연구인력 및 전문약사를 육성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그리스도인 봉사자 양성이란 목표아래 지난 40년간 1,30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본 대학은 학부과정과 함께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으로 생약학, 약품미생물학, 생화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분석학, 병태생리학, 임상약학 및 사회약학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2+4년제', 2022년 '통합6년제'의 학제변화 속에서 교과과정 개편, 시설 확장 및 우수교수의 충원을 통한 내실 있는 약학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약학대학은 2014년 「수도권특성화사업 (CK-II)」으로 선정된 「건강과학(중독)특성화 사업」 참여 학과로 중독분야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창의적 중독전문인력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9년 10월 학과설립 40주년 기념식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2022학년도 '2+4년제' 학제를 '통합 6년제'로 전환하여 약학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학대학 주요 연혁

- 1978. 10. 문교부(교육부)로부터 약학과 신설 인가를 받다.
- 1979. 3. 약학과 첫 신입생 입학하다.
- 1979. 3. 이종화 교수가 초대 학과장으로 부임하다.
- 1981. 3. 약초원을 개원하고 학과 첫 동아리로 생약반이 탄생하다.
- 1983. 2. 약학과 제1회 졸업생 25명을 배출하다.
- 1984. 2. 제5차 OECF차관 도입을 통해 교육 연구 기반을 확충하다.
- 1984. 3. 이숙연 교수가 2대 학과장으로 부임하다.
- 1985. 8. 제1과학관이 준공되어 약학과가 이사하다.
- 1987. 3. 이종화 교수가 3대 학과장으로 부임하다.
- 1987. 10. 대학원 약학과 석사과정을 인가 받다.
- 1990. 8. 이숙연 교수가 4대 학과장에 부임하다.
- 1993. 3. 학부제 실시에 따라 약학과가 의약학부에 소속되다.
- 1993. 3. 생명과학연구소가 신설되다.
- 1996. 3. 하남주 교수가 5대 학과장에 부임하다.
- 1997. 3. 제1회 신약개발 심포지움을 계기로 1회/년 약학 관련 심포지움 개최하다.
- 1997. 6. 제1주기 대교협 평가를 받다.
- 1998. 3. 임동술 교수가 6대 학과장에 부임하다.
- 1998. 3. 하남주 교수가 대학부설 생명과학연구소 소장에 부임하다.
- 1999. 10. 학과 개설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약학과의 날 개최하다.
- 2000. 3. 정재훈 교수가 7대 학과장에 부임하다.
- 2000. 9. 양재욱 교수가 8대 학과장에 부임하다.
- 2000. 3. 하남주 교수가 초대 대학원 학과장에 부임하다.
- 2001. 5. 약학과 부설 전통약물(의약)연구소가 신설되다.
- 2002. 9. 정재훈 교수가 9대 학과장에 부임하다.
- 2003. 3. 강진양 교수가 10대 학과장에 부임하다.
- 2004. 3. 이숙연 교수가 제3학부장(보건복지학부)에 부임하다.
- 2004. 9. 제1차 보건복지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다.
- 2005. 3. 이숙연 교수가 보건복지대학원장에 부임하다.
- 2005. 3. 임동술 교수가 제2대 대학원 학과장에 부임하다.
- 2005. 6. 제2차 보건복지 특성화사업을 교육부로부터 4년간 지원 받게 되다 .
- 2006. 3. 김경제 교수가 11대 학과장과 생명과학연구소 소장에 부임하다.

- 2007. 3. 정재훈 교수가 제3대 대학원 학과장에 부임하다.
- 2007. 9. 단과대학인 약학대학으로 변경되다. 강태진 교수 부임하다.
- 2009. 3. 임동술 교수가 제1대 약학대학 학장으로 임명되다.
- 2009. 8. 제3과학관으로 이주하여 약학과 강의실과 약학과 주요 연구실과 실험실이 입주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 2009. 9. 약학대학 내 기초의약학과가 편성되다.
- 2009. 10. 학과 개설 30주년 기념 약학과의 날 개최하다.
- 2010. 11. 교육부로부터 약학대학내 계약학과 설립 및 2명의 입학정원을 인가받다.
- 2011. 3. 6년제(2+4학제) 약학대학의 첫 신입생 39명 입학하다.
- 2012. 3. 정재훈 교수가 제2대 약학대학 학장으로 임명되다.
- 2013. 3. 송영천 교수 부임하다.
- 2013. 12. 6년제 1회 학생들 첫 실무실습 시작하다.
- 2014. 3. 김경제 교수가 제3대 약학대학 학장으로 임명되다.
- 2015. 2. 6년제 약학대학 제1회 졸업생 배출하다.
- 2015. 3. 박준범 교수 부임하다.
- 2016. 3. 김혜린 교수 부임하다.
- 2016. 3. 최성숙 교수가 제4대 약학대학 학장으로 임명되다.
- 2016. 9. 김희진 교수 부임하다.
- 2018. 8. 최성숙 교수가 제5대 약학대학 학장으로 연임되다.
- 2019. 10. 약학대학 설립 40주년 기념식을 하다.
- 2020. 3. 강진양 교수가 제6대 약학대학 학장으로 임명되다.
- 2021. 3. 김상범 교수 부임하다.
- 2022. 3. 강진양 교수가 제7대 약학대학 학장으로 연임되다.
- 2022. 3. 통합6년제 학제전환 후 첫 신입생 37명 입학하다.

■ 교육목표

미션

지·영·체의 균형진 전인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약학인재 양성

비전

- **미션(M)** 이타적 마음의 봉사와 나눔실천을 실현하고 자기주도 능력을 갖춘 약사양성
- **비전(V)** 심오한 학문연구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창의적 약학연구자 양성
- **열정(P)** 글로벌리더십, 시민의식과 소통능력을 갖춘 환자중심의 약사 양성

핵심가치

- 학문적 우수성
- 환자중심약료
- 창의적 연구
- 신약개발
- 사회적 책무와 나눔실천
- 소통과 협력
- 자기주도

인재상

- 책임감과 윤리관은 갖춘 창조적 인재
- 미래 창의적 약학연구자
- 이타적 열정을 지닌 환자 중심의 약사

■ 졸업 후 진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우수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의약품 전문인으로서의 약사의 직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산업: 제약기업 (학술개발연구, 의약품 제조, 의약품 품질관리, 제품 인허가 업무, 약가·급여 관련 업무), 화장품 기업, 식품기업
- 임상
 - 지역사회 약국
 - 의료기관: 병원 내 약제부서, 임상시험센터 등
- 보건·약무행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약무), 보건소 등
- 연구: 국립기관 연구소(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화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 학계: 연구 및 교육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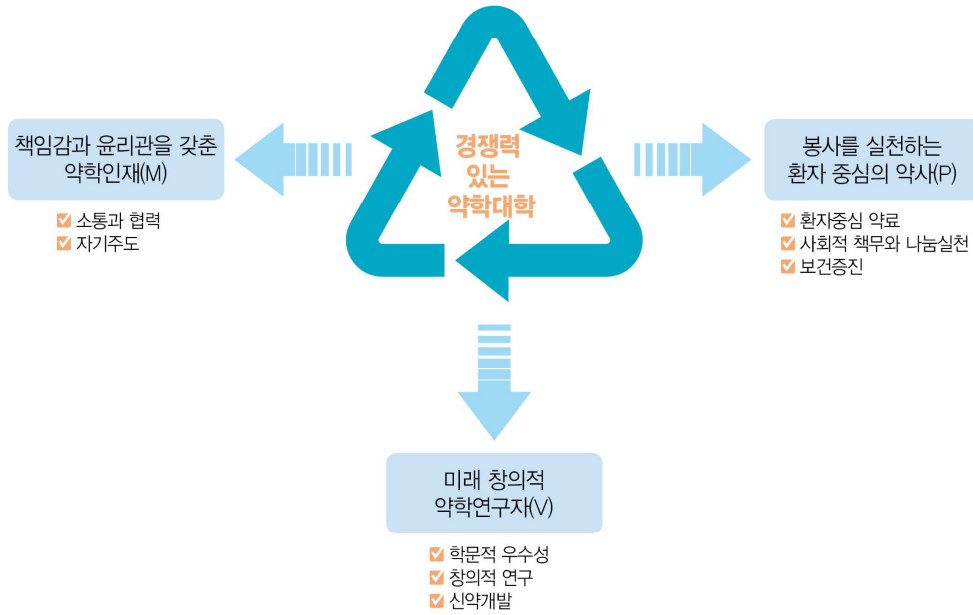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 사명: 지(智)·영(靈)·체(體)의 균형 잡힌 전인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약학전문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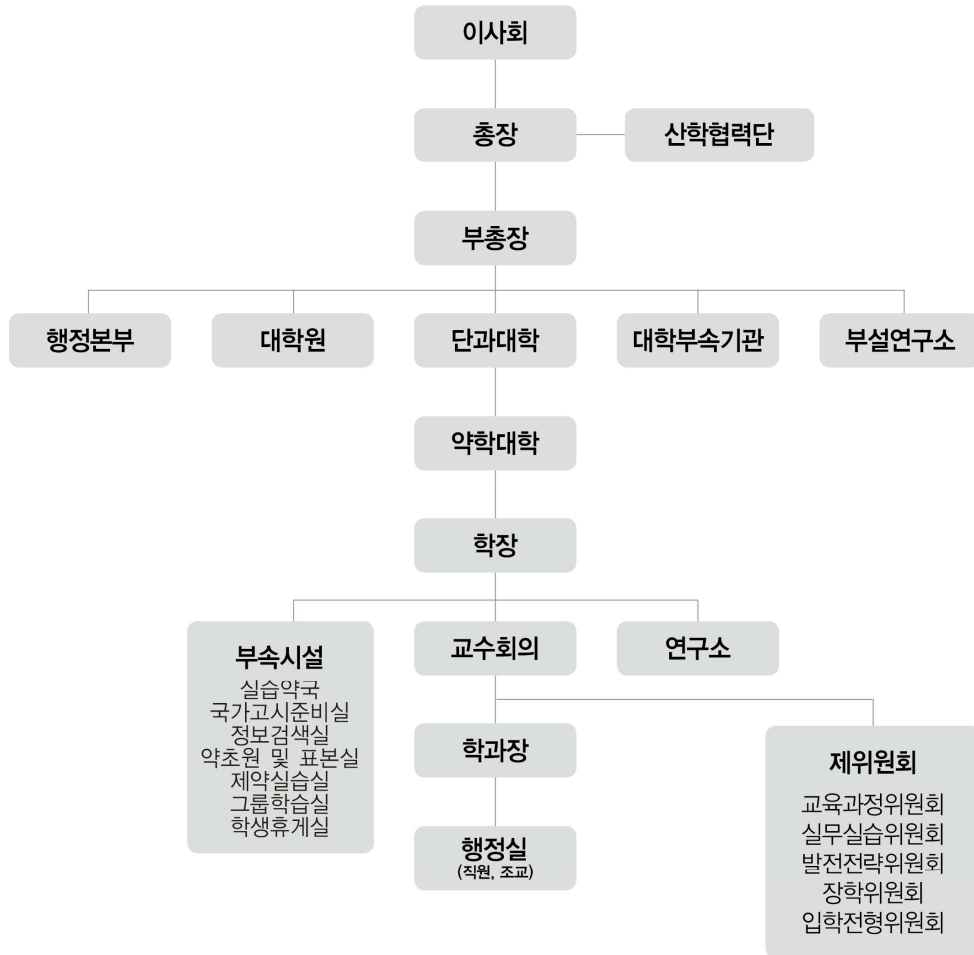


약학대학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지(智)·영(靈)·체(體)의 균형 잡힌 전인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약학전문인재 양성



■ 약학대학 기구



약학대학 학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본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약학대학 고유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은 삼육대학교 약학대학이라 한다.

제2장 예산 및 집행

제3조(회계연도) 약학대학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산의 수립) 약학대학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수립하여 다음해 약학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대학본부로부터 확보한다.

제5조(예산의 집행) 약학대학은 정해진 예산 및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다.

제6조 예산 수립 및 집행은 대학본부 기획처 기획예산팀, 약학대학장, 약학과장의 논의하에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과예산 중 오백만원 이하의 지출은 학장의 전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3장 학생선발

제7조(학생의 정원) ① 약학대학 약학과 정원은 30명으로 한다.

② 정원의 입학생의 수는 약학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계약학과)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 정원은 2명으로 한다.

③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9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본 대학 약학과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12년으로 한다.

②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약학과는 조기졸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약학대학의 약학과는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약학과와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 약학과 전공교육 4년

제5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0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이에 따른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②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 개강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2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임시휴업일) 입학전형, 졸업식 및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1조의 수업일수 이외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1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학사운영규정) 대학의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부속기관 및 부속시설

제15조(부속기관 및 부속시설) ① 본 대학은 다음의 부속기관과 부속시설을 둔다.

1. 실습약국
2. 국가고시준비실
3. 정보검색실
4. 약초원 및 표본실
5. 제약실습실
6. 그룹학습실
7. 학생휴게실
8. 건강증진센터(대학본부)
9. 학생상담센터(대학본부)

② 부속기관 및 부속시설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입학, 편입학 등록 및 전과

제1절 시기

제16조(입학 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재입학은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2절 자격

제17조(입학 자격)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내에서 정규 학사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한 자 중에서 60학점 이상을 취득(예정)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전문학사) 학위 취득(예정)자
4. 외국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국내 정규 4년제 대학에 준하는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출신학과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자(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사항 및 특별전형의 경우 약학대학입학전형위원회 결의에 따라 입학 자격 기준이 주어진다.

제3절 절차

제18조(입학지원 서류)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지원자는 약학대학 모집요강에 따라 요청되는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9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입학사정) ①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7조의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사정한다.

제20조(입학 허가) 약학대학의 입학 허가는 총장이 허가한다.

제21조(입학 수속)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같은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1절 휴학

제22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도 기회 부여를 위하여 총장은 직권에 의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휴학 기간)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병역으로 인한 휴학) 병역(자원입대 포함)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5조(복학)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한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2절 유급, 퇴학, 제적, 재입학, 학사경고

제26조(유급대상)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균 평점이 1.85 미만인 자
2. 1년간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자

제27조(유급시기)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제28조(재이수 범위) 제26조의 각 호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체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20학점으로 제한한다. 2회 유급 시 제적된다. 또한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29조(유급절차) 제26조의 각 호 중 해당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 20일 이내에 유급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30조(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삼육대학교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삼육대학교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유급 2회 또는 학사경고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를 받은 자.

제31조(제적자의 재입학) 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제30조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학사경고)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 등 학사경고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장 교육과정의 이수

제1절 교육과정

제33조(교과목의 분류)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③ 교양과목은 인문학 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문화예술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하며 온라인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34조(교과 이수단위)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실습, 실기, 체육,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교과목의 이수) ① 수강신청은 약학과 학년의 전공과목을 우선으로 하며, 학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급학년의 전공과목 및 대학 내의 타 학과(부)의 전공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약학대학의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계절학기를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설여부를 교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기타의 계절학기 과목 중 약학대학 재학생은 약학대학 교과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교과목의 이수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약학과의 경우 학과 특성 상(내용적 연계, 실무실습일정, 국시일정) 두 학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예 약제학 I - 약제학 II)의 수강신청을 역순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약학과의 전공과목 중 선수과목은 6학년 교육과정인 필수와 심화 실무실습과목을 수강하기 위하여 5학년 2학기까지 모두 이수해야 한다.

제2절 수업과 등록

제36조(수업시간표) 매주의 수업시간표는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37조(휴·보강)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등록)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9조(시험) 각 과목의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퀴즈나 과제물 평가 등 수시 평가를 부과한다.

제40조(응시자격) 학생은 3주 이상의 수업에 결석하면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단, 질병, 기타 사고로 부득이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41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연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 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③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제4절 이수의 인정

제42조(학점 인정)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D 이상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3조(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제44조(학점의 취소)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45조(학점 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제46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23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25학점으로 한다.

제47조(연계전공) ① 3개 이상의 학위과정이 연계 또는 통합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연계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③ 연계전공과정 이수에 관한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8조(학·석사 연계과정)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49조(졸업 및 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65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학년	
제3학년	46학점 이상	제5학년	138학점 이상
제4학년	92학점 이상	제6학년	165학점 이상

제50조(재입학생의 학점) 재입학생에 대하여서는 종전에 수학한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1조(단일전공과정 학점) ①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제52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등) 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5학년(6학기) 이상 수료한 후부터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 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53조(학위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약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54조(졸업) ① 삼육대학교 학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65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생 활동

제55조(학생회) ① 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및 각 동아리를 둔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생활지도위원은 학장(의장), 학과장(서기), 각 학년 지도교수로 구성한다.

제56조(학생회비) 약학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자율적으로 학생회비를 납부 한다.

제57조(학생단체의 조직 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8조(학생지도) ① 학(과)장은 매 학년 초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들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기타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서 따로 정한다.

② 약학대학은 평생지도교수제를 실시하며 각 학년별 지도학생, 담임교수를 두어 학생을 지도한다.

제59조(학생상담) ① 지도교수는 매 학기 상담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의 고민과 진로를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② 학생상담은 일반상담, 신앙상담, 학업상담, 진로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③ 학생상담 실적은 교원업적 평가 시 반영한다.

제60조(학생활동의 규제) ①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를 포함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61조(학생활동의 승인 사항) 학생회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생활동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 인원 등을 기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을 통해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급단위 이상의 공적 행사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62조(간행물)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제63조(징계 및 절차)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한다. 학생 징계 절차는 대학본부 학생지원처와 논의하여 진행한다.

제64조(징계자의 재입학) 학칙 또는 제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학과교수회의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제65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우리 대학교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처리한다.

제11장 규율 및 상벌

제66조(징계처분) ①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5. 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그리스도인의 행동규범에 위배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67조(출·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결석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직제

제68조(교직원의 직제 및 정원) 우리 대학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강사(교육강사, 임상교육강사), 조교 및 사무직원 등의 교직원을 두고, 그 직제 및 정원은 별도로 한다.

제69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임시직원) 전 조의 교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사무 촉탁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71조(학장) ① 약학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약학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약학대학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약학대학을 대표한다.
- ③ 학장은 대학본부의 행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학 본부의 중요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약학대학 현안에 대해 본부에서 공유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약학대학 교원 인사(임용, 승진 등) 시 약학대학 교수위원회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④ 학장은 약학대학 소속교직원의 복무를 관리 감독 한다.
- ⑤ 학장은 약학대학 보직교수의 인사를 관장한다.
- ⑥ 학장은 약학대학 내 위원회 인사 및 업무를 주관한다.
- ⑦ 학장은 약학대학 회계 운영을 관리 감독한다.
- ⑧ 학장은 제 위원회를 두고 학사 및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
- ⑨ 학장은 약학대학 차원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는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2조(조직) ① 약학대학 약학과에는 학과장을 두어 약학 대학장을 보좌하며 학과의 교무 전반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② 약학대학에는 학과장 이외 다음과 같은 각 부문책임 교수를 임명하여 약학대학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1. 인성지도 부문 - 인성교육 지도교수
 2. 연구, 대학원 부문
 3. 장학 및 학생 관리 부문
 4. 교육, 정보 부문

제73조(약학대학 행정조직) ① 약학대학에는 약학대학 행정실을 둔다.

- ② 약학대학 행정실에는 삼육대학교의 직원으로 행정팀장을 임명한다.
- ③ 약학대학 행정실에는 1인 이상의 조교를 둔다.
- ④ 행정팀장과 약학대학 행정 조교는 약학대학의 행정 및 교무, 학사 업무를 지원한다.
- ⑤ 약학대학 행정실은 제3과학관 315호에 둔다.

제74조(강사) ① 강사는 교육강사, 임상교육강사로 구분한다.

- ② 강사는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과 회의를 거쳐 학과장이 추천하여 교무처장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교육강사는 교내에서 학기당 최소 2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해야 한다.
- ④ 임상교육강사는 실무실습 협력 기관에 속한자로서 학생들의 필수실무실습과 심화실무실습 교육을 담당한다.

제13장 교수회의

제75조 약학대학은 약학대학 교수회의 및 제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 된다. 교수회의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6조(교수회의) ① 위원 : 약학대학 교수 전원

② 기능 : 약학대학의 중요 결정사항에 관한 논의와 결정을 수행 한다

③ 의결의 위임 : 업무 효율상 교수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해당 업무에 한하여 소관 제 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77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의는 학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제78조(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장 등록금

제79조(등록금)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0조(등록금의 공시)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이를 공시한다.

제81조(휴학자, 복학자의 등록금) 휴학자의 등록금은 납입 기일 전에 휴학이 허가되었을 때는 그 학기부터 면제한다. 복학 시는 그 학기부터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2조(등록금의 감면 제한)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83조(등록금의 징수시기)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4조(반환금지) 납부된 등록금은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5조(등록금 반환)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삼육대학교 학사운영 시행세칙 18장 제1조의 반환 기준에 따른다.

제86조(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국 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운영협의회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7조(등록금 체납자의 처리) 총장은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장 외국인

제88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①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약학대학입문시험으로 학력을 평가하여 입학전형기준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입학한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제16장 장학금

제89조(장학금) ① 우리 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을 별도의 지급 규정을 두어 약학대학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장 자체평가

제90조(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장 보칙

제91조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학대학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2조(기타) ① 약학대학 학생의 수업, 성적, 진급 및 유급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약학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삼육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호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아래와 같이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전공): 약학과, 약학사

부 전 공: ○○○

○○○○년 ○○월 ○○일

삼육대학교 총장 ○ ○ ○

학위등록번호: 삼육대 ○○○○(학)○○○

제위원회 규정

제1조(제위원회) 약학 대학 내에는 위원회를 두어 약학대학의 부문별 정책을 제시하고 실무 진행의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약학대학의 교수가 소속위원으로 활동 하며 정책을 제시한다.

제3조(당연직 위원) 학장과 학과장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6명으로 구성하고 학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학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회의를 총괄하고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학과장은 각 위원회의 서기로서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의결 및 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② 각 위원회 별 논의 후 전체 교수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 결의 및 수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모든 교수에게 공지한다.

제7조(교육과정위원회) ① (목적) 약학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검토와 연구를 위하여 교육과정 위원회를 둔다.

② (기능)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실정에 맞는 6년제 교과과정의 개편 논의
2. 교수별 담당과목 배정 및 교수 충원 제시
3. 외부강사 선정, 섭외 및 위촉 건의
4. 대학원을 포함한 학부교육의 발전 방향제시
5. 프리셉터 교육(연수) 및 관리(실무실습위원회와 공동)
6. 졸업생지원 프로그램 개발(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과 연계)
7. 기타

제8조(실무실습위원회) ① (목적) 실무실습위원회는 약학대학의 실무실습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운영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다룸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능) 실무실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무실습 코디네이션
2. 실무실습 지침서, 평가서 준비
3. 프리셉터 교육(연수) 및 관리 (교육과정위원회와 공동)
4. 프리셉터 예우에 관한 사항
5. 기타

③ 실무실습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발전전략위원회) ① (목적) 약학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운영, 평가 및 발전기금을 모금 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② (기능) 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약학대학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2. 약학대학의 내·외 평가에 대한 대비
3. 약학대학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조사
4. 약학대학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5. 기타

제10조(장학위원회) ① (목적) 장학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능)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약학대학 장학금 수혜자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약학대학 장학 기금관리 및 운영
3. 약학대학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기타.

제11조(입학전형위원회) ① (목적) 2+4 학제의 약학대학 입시업무를 총괄한다.

② (구성) 대학본부의 입학본부가 운영하는 약학대학입학전형위원회로 운영한다.

③ (기능) 입학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약학대학 입학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2+4학제 약학대학 입시업무 계획 수립 및 운영
3. 기타 약학대학 입학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임시위원회) 약학대학내 상설 위원회 관장 사항 이외의 사안에 발생 시 학장 또는 교수 위원회의 지시에 의해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및 근거) 이 내규는 학칙 제8조 학생선발 계약학과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의 근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5조 제2항에 의한 약학대학 전공교과과정 내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 한다.

제2조(명칭) 본 학과는 삼육대학교 약학대학내 계약학과로 칭한다.

제3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① 약학대학내 계약학과는 제약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또는 약학 관련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② 약학대학내 계약학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 학생 정원을 배정한 대학에 설치한다.

③ 약학대학내 계약학과는 학사학위과정이다.

제4조(계약 및 설치) ① 약학대학내 계약학과는 대학이 제약 산업체 등과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산업체등의 부담금에 대한 사항
5. 재학중 퇴직, 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계약학과 학생의 졸업 후 계약을 체결한 해당 제약 산업체에서의 최소 근무연한(최소 3-5년)
7. 기타 계약학과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② 약학대학내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학생정원 및 입학자격) ① 본 대학 계약학과와 정원은 2010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 과로 부터 배정받은 2명이다.

② 본 약학대학내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2학년 이상 수료한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 학칙이 정하는 학력수준을 갖춘 자
2. 계약을 체결한 제약 산업체의 정직원으로서 해당 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해당 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함

제6조(학생의 선발) ① 약학대학내 계약학과 입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 제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입학처에서 발행하는 입시요강에 명시한다.

1. 입학전형요소에 약학대학 입문시험(PEET)성적을 일정비율 의무 반영
2. 그외 대학성적, 외국어 성적 등은 약대 일반전형에 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② 계약학과와 입학에 필요한 최저학력기준을 사전공지하며 지원자가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제7조(약대내 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해당 제약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산업체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② 약대 내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수업등)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와 특성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으며 제약산업체등이 의뢰한 내용을 반영 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약학대학 전공교육과정과 합동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안내한 「약대 내 계약학과 설치·운영요령」 에 따른다.

학업성적 평가 내규¹⁾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52조²⁾에 의거 학업성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등급)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A, B+, B, C+, C, D+, D, F, FA, P로 세분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 성적 분포 비율은 [표 1]과 같이 한다.
- 심화실무실습과목의 성적은 Pass 또는 Fail (P/F) 로 평가한다.

[표1] 성적평가 비율표

과목 범위	평가비율					합계	평가방식
	A	B	C	D	F		
일반과목	0~30%	0~70%	30~100%			100%	상대평가
실험실습과목(100%)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교직 및 성격과목 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 과목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액티브러닝 수업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3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3
MVP혁신법에 의한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4
핵심교양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4
캡스톤디자인 수업 (인정과목에 해당)		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과목)		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③ 등급별 제한 인원내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A-A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B-B ⁺	0%-70%	0명	43×0.7=30.1명(30명)
C ⁺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1) 삼육대학교 규정 학업성적 평가 내규 [SYUP-A-013]에서 발췌(단, 삭제규정 제외)

2) 약학대학 학사운영규정 제41조(성적 평가)에 해당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⑥ 평가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대학본부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제4조(출석점수평가) 출석점수는 출석점수 평가기준(별표1)에 따라 부여한다.

제5조(유고결석) ① 다음 표2의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표2]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3일
입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② 유고결석은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제6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평균)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평점은 다음의 표3 기준에 따른다.

[표3]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제7조(평가성적공시) 교과목 담당교수는 평가된 성적을 해당 기간에 일정장소에 공시하거나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성적평점) ① 학칙 제48조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점(실점) 평균 점수로 한다.

$$\frac{[\text{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 \times \text{교과목별 학점 수}]{\text{의 합계}}}{\text{수강신청 총 학점 수}} = \text{학기 평점(실점)평균}$$

②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③ 성적(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성적입력) ① 매 학기말 성적은 교과목별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입력 기간 내에 차세대통합 정보시스템(SU-WINGs)을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학기 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과목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가 되며, 성적입력 시 결석 일수를 입력한다. (FA 처리 기준: 수업시간 × 3배 → 예) 2학점이면서 3시간 수업일 경우, 9번 결석부터 FA처리

제10조(성적 이의 신청)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확인 및 정정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성적 정정) ①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교수의 전산입력 착오, 성적누락이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답안지, 출석부, 과제물)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별지 서식)을 소정기일 내에 교무처 학사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정정원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①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②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 까지 허락한다.

제13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군복무 또는 군대체복무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학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성적등급의 환산) 이 내규 제2조의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성적평점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제15조(성적평가자료 보존기간) 출석 및 성적평가 자료는 5년간 보존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 추천기준) 학업성적우수장학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정한 순위 기준을 따른다.

1. 평균평점이 같은 경우 :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2. 취득학점이 같은 경우
 - 가. 전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 학문의 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높은 자 순(차례대로)
 - 나. 전체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3. 전 1, 2호가 같은 경우
 - 가. 전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 학문의 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총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순(차례대로)
4. 전 1, 2, 3호가 같은 경우
 - 가. 채플성적이 좋은 자를 우선한다.
 - 나.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한다.
5. 교과 성적 중 F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장학금별 추천자 구분) 장학금별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약학대학 장학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에 따른다.

1.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 입학 시 - 교무처장, 재학 시 - 학생지원처장
2.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 학생지원처장
3. 임원장학생 : 학부(과) 임원 - 학(부)과장, 자치기구 임원 - 학생지원처장
4. 근로 장학생 : 해당부서장
5. 나눔1, 2 장학생 : 학생지원처장, 학부(과) 배정은 학부(과)장
6. 가족, 공로, 자매학교진흥, 가계곤란 기혼자, 성적향상, 마일리지, 삼육MVP, 건강증진, 교직원복지, 세움, 삼육드림, 봉사대, 글로벌 봉사대, 교환학생, 북한동포, 보훈, 기타 장학생 : 학생지원처장
7. 외국인 장학생 : 입학 시 - 교무처장, 재학 시 - 학생지원처장
8. 교외 장학금 : 기탁자(단체), 학생지원처장

제4조(장학금 인원배정) 장학인원 배정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학부(과)별, 학년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성적우수장학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5조(근로장학금 운영기준) ① 근로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지도교수는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교수회의를 통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학생지원처장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정한다.

③ 근로장학금은 근로부서의 부서장이 매 월초 학생지원처에 신청하여 지급한다.

제6조(장학지도) 학과장은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에게 수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약학대학생 실무실습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실무실습교육을 내실화 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학생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며 실무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학대학 실무실습교육”(이하 “실무실습”)이란 약학대학과 실무실습교육기관(이하 “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약학대학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협력 교육 과정을 말한다.
2. “실습기관”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지역약국, 제약기업 등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약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제안한 실무실습 교육기관 자격을 갖추고 약학대학 학생의 실무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3. “실무실습교육 지원비”(이하 “실습비”)란 실무실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약학대학과 실습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해서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교육지원 비용을 말한다.
4. “실무실습위원회”는 실무실습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약학대학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실무실습교육생”(이하 “실습생”)이란 약학대학에 정규 등록을 하고, 실무실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학점 인정 및 약학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약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무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6. “산학협력”이란 약학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관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 “약학대학 실무실습교육”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임상실무, 제약 및 약무행정 그리고 연구실 심화실무실습 등이다.

제2장 실무실습 운영

제4조(실무실습 운영원칙) ① 실무실습은 실습생이 졸업 후 약사(藥師)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실무실습은 약학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실습생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약사(藥事)와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약학대학은 실무실습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실무실습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실무실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바에 따라 교육 과정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1. 약학대학의 실무실습 교육계획
2. 약학대학의 실습생 평가방법 및 학점 부여의 근거 기준
3. 실습기관의 교육담당자 배정 및 지도 계획
4. 약학대학의 지도(담당)교수 배정 및 지도 계획
5. 기타 현장 실무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약학대학은 실무실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 학생배정, 실무실습계획, 진행 및 교육평가 등 실무실습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

제5조(실습기관) 실무실습은 약학대학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약학대학이 주체가 되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무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실습기관은 약학대학과의 공식적 협력관계(양해각서(MOU) 또는 공문) 통해 실무실습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실습기관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된 기관이거나 실무실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③ 실습기관에서는 실무실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무실습 운영 기준 및 절차
2. 실무실습 학생 교육,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실무교육 담당자의 배치
3. 약학과학과 협의하여 정한 실무실습 운영 계획
4. 실무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확보 및 제공
5. 실무실습 학생 지도, 출석, 평가 관리

④ 실무실습 수행 중 또는 실무실습 전, 후에 지속적인 실무실습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학과학과 실무실습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실무실습 협약을 개정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실무실습위원회에서 학생 면담 및 실습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결정한다.

제6조(실무실습 운영시간 등) ① 실무실습의 실습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실무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무실습 기관의 특성상 또는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약학과학과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교육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실무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약학과학과 및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도 있다.
3. 실무실습 운영시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습기관은 사전에 그 내용을 약학과학과에 서면 통보하고 약학과학과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실무실습은 제1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7조(실습비) ① 대학에서는 실습기관에 대해 학생들의 실습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무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의 권고안에 따라 약학과학과 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실습비의 부담 주체는 학교가 되며 학생에게 별도의 실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③ 실습비 지출내역을 약학과학과 홈페이지에 계정별로 공개한다.

④ 실습기관은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실무실습 운영절차) ① 약학과학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 절차에 따라 실무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실무실습 운영 계획 수립
2. 실무실습 실습기관 수요 조사 및 접수
3. 실무실습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정보 공지
4. 실무실습 참여 학생 신청, 접수
5. 실습기관 및 학생 간 연계 및 배치
6. 실무실습 참여 학생 대상 사전 교육 실시
7. 실무실습 보험 가입 (5학년, 6학년 학생 대상)
8. 실습기관별 실무실습 계획에 따른 실습 수행
9. 실무실습 수행 점검 및 관리
10.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제반 서류 제출
11. 참여 학생의 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
12.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인정 처리

② 실무실습 관련 협약은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필요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실무실습 불인정 기준 및 조치사항 등) 실무실습의 취지 및 목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실무실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실무실습위원회에서 정한 실무실습 수행기준, 운영 및 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1.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공식적 협력관계(양해각서(MOU) 또는 공문)를 기반으로 실무실습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경우
2. 대학과 무관하게 근로, 아르바이트 등의 목적으로 학생 및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실시한 경우
3. 인증 받지 아니한 실무실습기관에서 실습한 경우
4. 의무 이수시간, 이수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약학대학 실무실습 표준 기준 2015년도)
5. 실무실습의 교육목적, 취지 및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의 경우
6. 기타 이 지침의 다른 조항을 위배하는 형태의 실습 형태 등
7. 학생 개인이 별도로 실습기관을 섭외한 경우

제10조(실습생의 자격) ① 약학대학 실무실습의 취지 및 한국약학교육협회에서 권장하는 전공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정규 약학대학 학기를 기준으로 삼육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제공하는 선수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교과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② 실무실습 분야 및 기관에 따라 특정 선수 과목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실습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4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실무실습 수행 학점이 부여되는 6학년 1학기 또는 2학기를 등록하는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④ 실무실습에 신청,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이론 교과를 마치는 5학년 2학기 말에 선수과목 이수 증명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실무실습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규 학위과정 이외의 학생
2. 정학, 휴학 등으로 처벌 중인 학생
3. 유급 또는 학사경고로 실무실습 이수가 어려운 경우
4. 기타 약학대학장이 정하는 제외 대상 학생 등

제11조(건강검진) 실무실습기관이 건강검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 실무실습 시작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표를 실무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실습학생 준수사항) ① 실무실습생은 소정의 실무실습 교과목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약학대학의 실무실습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실무실습 관련 이수 근거 제출에 관한 사항

1. 필수실무실습 : 실습일지 또는 실습보고서, 출근부 등을 작성하여 실무실습 종료 1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2. 심화실무실습 : 실습일지 또는 실습보고서, 출근부 등을 작성하여 실무실습 종료 1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무실습 참여 학생은 교육생의 신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약학 대학의 실무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 및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 및 기준
3. 실무실습 중 습득하게 된 환자개인정보 및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등의 누설 금지 등
4. 실무실습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실무실습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제13조(실습학생 권리) 실무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1. 실무실습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실무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무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실무실습 운영기준 또는 실무실습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4. 실무실습 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실무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약학대학은 실무실습교육 전반을 계획, 감독할 책임이 있다. 실무실습교육 세부 프로그램의 개발과 계획 수립, 운영은 약학대학과 실습기관의 상호 합의하에 시행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실무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실무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약학대학 측에 서면 통보하고 약학대학의 서면 동의 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실무실습 수행 중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 실습을 할 수 없을 경우, 실무실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약학대학은 일정기간 내에 실습기관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학생의 거취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실습기관에 서면 통보한다.

④ 전항의 사유로 인해 실무실습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실무실습위원회에 실습기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⑤ 현장 실무실습 참여 학생이 전공 관련 실습 업무 또는 기타 사항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및 중도 포기를 요청한 경우 절차

1. 학생 면담
2. 실습기관 방문 후 참여 학생 실습 근무 내용 및 환경 파악
3. 학생과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실습기관에 학생 역량에 따른 업무 배정에 관한 제고를 요청
4. 업무 조정 후에도 중도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양해를 구한 후 사후 조치

⑥ (현장실습의 유보) 현장실습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시는 실무실습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실습을 유보할 수 있다.

제15조(실무실습 규정 위반시 조치) ① 실습생은 실무실습 교육기간 동안 실무실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이 다음 각 호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실무실습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약학대학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무단 결석 등 학생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실무실습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2. 실무실습 프리셉터의 교육 및 실습 수행,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3. 본교 학생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거나 약학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약학대학은 실무실습기관으로부터 전항의 문제를 보고받은 경우, 실무실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약학대학은 일정기간 내에 실습기관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학생의 거취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실습기관에 서면 통보한다.

제16조(출결관리) 약학대학에서는 실무실습기관이 해당 학생에 대한 출결 사항을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안내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결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실무실습 중 안전사고) ① 실습기관은 실무실습교육 중 실습생의 사고, 상해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약학대학에 보고하여야 한다. 응급치료의 비용 부담은 일차적으로 약학대학과 실습생에게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실습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약학대학은 실무실습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실습생의 교육기간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8조(실무실습의 평가 등) ① 약학대학은 실무실습 평가기준을 실습기관에 안내하고,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평가기준을 확정하며, 실습기관은 해당 기준에 따라 실습생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약학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약학대학은 실습기관이 제출한 실습생에 대한 평가와 필요할 경우 자체평가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습생의 실무실습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제19조(실무실습지도교수의 역할 및 학점의 인정) ① 실무실습지도교수는 약학대학의 교수로서 이 실무실습 운영지침에 준하여 실습지도가 가능한 자이다.

② 실무실습지도교수는 실습기관의 실무실습 평가서, 실습학생의 실습관련 성과물(실습일지, 실습

보고서, 출근부 등)과 약국실무 기말고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는 실습시수로 인정된다.

③ 약학대학은 실무실습에 대한 학점 인정 시, 실무실습 수행학기를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실제 실무실습이 수행된 학기의 학점으로만 부여하여야 한다.

④ 교과목구분은 교육과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이 평가한다.

1. 필수실무실습 : 이수자의 성적은 실무실습 평가 점수 50%, 약국실무 기말고사 50%로 학교에서 정한 실습과목 평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심화실무실습 : 이수자의 성적은 P/F (pass or fail)로 평가한다.

제20조(비밀유지) “약학대학”과 “실습기관”은 실무실습교육 협의 및 시행과정에서 입수한 자료, 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상호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제3장 실무실습위원회

제21조(실무실습위원회 목적) 약학대학은 실무실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실습 계획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논의 및 결정하고 실무실습이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실무실습위원회 기능) ① 연간 실무실습 운영 계획 수립

- ② 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
- ③ 실무실습 교육(지도) 강사 위촉
- ④ 실습생 지도 및 성적평가에 관한 기준 작성
- ⑤ 실습비 관련 사항
- ⑥ 기타 약학대학 및 당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23조(실무실습위원회 구성) 실무실습위원회는 제21조의 목적과 제22조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교수인원을 포함하고, 각 실무실습 영역별 교수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다.

제4장 실무실습 운영내규 및 기타

제24조(실무실습 운영내규) 필요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무실습 내규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약학대학의 실무실습교육담당자 및 실습기관의 실무교육강사의 위촉, 임무 및 권한
2. 필수 및 심화실무실습의 시기, 기간, 평가 및 학점 인정 등에 대한 사항
3. 약학대학의 실습기관에 대한 실습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심화실무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실무실습 세부운영사항 및 각 조문에 대한 세부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약학대학 실무실습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일) 이 지침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변경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변경일) 이 지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실 심화실무실습 운영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연구실 심화실무실습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실 심화실무실습”이란 학생의 지원과 교수의 승인에 의해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내 해당 교수의 연구실에서 심화실무실습을 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실습생 수) ① 교수 1인당 실습생은 3인을 넘지 않도록 하되 약학대학 실무실습위원회의 승인 하에 실습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실습생 수는 해당 학년 총원의 40%를 넘지 않는다.

제4조(진행절차) ① 해당 실습 년도의 전년도 2학기말 종강 시점까지 담당 교수의 면담 및 승인을 통해 진행한다.

② 연구실 심화실무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실 심화실무실습이 결정된 학생은 연구실 심화실무실습 승인서 양식을 지체 없이 학과 행정실을 통해 제출한다(별첨 [양식 1] 참조).

제5조(이수시간) 심화실무실습 기간은 600시간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성과물) ① 지도교수가 제시한 일정한 주제에 대한 논문 형식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별첨 [양식 2] 참조).

② 보고서는 실습 종료 1주일 이내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학과행정실에 제출한다.

제7조(실습비) 별도의 실습비는 책정하지 않는다.

제8조(시수) ① 실습 시수는 팀 티칭의 형태로 실습에 기여한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시수 체계를 통해 배분한다.

② 연구실 실습 시수는 학생 1인당 0.5시수로 우선 배정한다.

③ 연구실 실습 인원에 해당하는 시수 총계를 제한 나머지 시수를 연구실 실습 총인원을 뺀 나머지 인원으로 나누어 연구실 외 실습인원을 곱해 해당 기관실습 담당 교수에게 배분한다.

산식 :

1. 연구실 심화실습 시수 : 지도학생 1명당 0.5시수

2. 연구실 외 실습기관 실무실습의 시수 : $15-0.5*X$

3. 연구실 외 실습기관 실무실습 시수를 해당 실습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학생수에 따라 배분한다.

산식 : 연구실 외 실무실습 학생 당 실무실습 시수 = $(15-0.5*X)/(N-Y)$

총 심화실습 시수 15시수, 총 실습인원 N, 연구실 실습인원 X, 연구실 실습인원 계 Y,

④ 심화실습 시수와 관련해서는 운영범위 내에서 재산정 할 수 있다.

제9조(Make up 학생 연구실 실습) 실습기관(임상·제약·행정실습)에서 본교 약학대학에서 규정한 심화실무실습 기간 15주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해당 기관을 담당하는 교수의 연구실에서 잔여기간 실습을 수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1]

연구실 심화실무실습 승인서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__학년			
성 명		학 번	
연락처(H.P.)			
실습연구실		담당 교수	
실 습 기 간	년	월	일 (주)
위 학생의 연구실 심화실습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교수:		(서명 또는 인)	
삼육대학교 약학대학장 귀하			

약학과 실무실습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약학대학(이하 대학) 교과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습비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은 본 대학의 약학대학 학생들의 실무실습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의 “실습비”라 함은 비등록금 계정으로 관리되어 필수실무실습과 심화실무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학과에서 사용되는 경비이다.

제4조(예산배정) ① 대학에서는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실습비에 관한 계획을 기획처 예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처 예산 담당부서는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5조(지출원칙) 경비는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 양식에 따라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1. 실습비로 지급되는 경비는 1인당 10만원/주 이내를 기본으로 하여 최대 주당 20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2. 기타 실습 운영과 관련된 비용 지출 목적의 적부는 담당교수의 청구에 의해 학과장과 협의 결재 과정을 통해 판단한다.

제6조(집행범위 및 집행제한) ① 실습비의 집행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실습 및 실습 운영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본 실습비에서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7조(잔액이월) 실습비의 집행 잔액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기타사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삼육대학교 비등록금 계정운영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활동 지원비

1.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견학, 실무실습 등과 관련된 실습 site에서 청구된 경비
2. 실무실습 관련 세미나 및 특강비
3. 기타 교육활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등
4. 실무실습 현장 방문에 소요되는 제 경비
5. 실무실습 site 개발 및 프립셉터 양성 비용
6. 실무실습 준비를 위해 참여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경비

실무실습 교과과정

<실무실습 교과과정 개요>

1. 교과목 편성 약학대학의 실무실습은 다음과 같은 교과 과정으로 구성된다.

구분	과목	시간	소계	학점	소계
기초약무실무실습		60시간	60시간	2학점	2학점
필수실무실습	병원약국실습	400시간	760시간	7학점	15학점
	제약산업실습	120시간		3학점	
	약무행정실습	40 시간		5학점	
	지역약국실습	200시간			
심화실무실습	심화실습 MODULE I	120시간	600시간	3학점	15학점
	심화실습 MODULE II	120시간		3학점	
	심화실습 MODELE III	120시간		3학점	
	심화실습 MODULE IV	120시간		3학점	
	심화실습 MODULE V	120시간		3학점	
이수 합계			1420시간		32학점

※ 총 1420시간 표준 교과과정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부 심화실습을 MODULE화하여 학생이 원할 경우 초과 유
동성있게 운영하고 있음

2. 기초약무실무실습 개요 및 운영

1) 교과목의 개요

필수실무실습과 심화실무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의약정보 검색 및 제공
처방전 사전감사, 일반조제, 주사조제, 복약지도, 약물요법관리, 의료팀과의 의사소통 등에 숙지하여
우수하고 자립심 있는 실습자로서의 실무실습 능력을 배양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과목	장소	학년배치	기간	구분	학점
기초실무실습	교내 실습약국	5학년 2학기	16주	전필	2

3) 시설 및 장비

- ① 위치 : 제3과학관 3층 310호
- ② 면적 : 8 x 12.4 = 99.2m²
- ③ 정보검색실: 자료 검색용 컴퓨터 : 20대
- ④ 일반조제실
조제대 4 set (정제조제, 산제조제 등 종합 조제를 위한 모듈 형태의 조제대 4)
45포 반자동포장기(산제 겸용) 2대 (JVM JX-120SA)
30포 로타리포장기 1대
전자동포장기 1대 (JVM JV-84DE)
주사제 무균조제용 수직형 BSC 2대
주사제 무균조제용 수평형 BSC 2대
약장 및 투약대

회전장

4) 조제용 약품 및 비품

① 조제용 약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기식, 한약제제 등 (100여 품목)

② 기타 소모품 및 조제용 비품

a. 무균조제 관련

복장 : latex glove, poly glove, 일회용 마스크, 부직포 토시, 부직포 앞치마, 일회용 가운

조제비품 : 주사기(30cc, 5cc), 주사바늘, vial, ampule, filter, 핀셋, 알코올 솜(알코올 스텀), 스테인레스 Jar, Needle폐기통

b. 조제 비품

소모품 : ATC roll, 반자동 포장기 roll, 라벨지

계수기 (계수판)

정제 분쇄기 (JVM JV-ST20)

유발, 유봉

c. 소모품

- Plastic 시럽병, 안약병, 갈색 유리 차광병, spatula 등

d. 기타

5) 교육체계 : 실습 구성

Section 1 : 의약정보 검색 및 제공

Section 2 : 처방확인 일반조제 실습

Section 3 : 주사제 조제 실습

Section 4 : 복약지도 roll play

Section 5 : Case 발표

주차	내용
1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 전반에 걸친 설명 교재 p7~p9 • 업무 장소에서의 태도, 조제실에서의 자세 • 시설에 대한 소개 및 파악 • 시설에 대한 소개 • 시설물 목록 및 약품 목록 작성 파악 : 학생 당일 실습실습약국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파악한다.
2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소양 실습 : 강의
3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지향식 의무기록 재설명 : POMR, SOAP note , FARM note • Medical record 및 용어의 이해 : report 용어, 약어의 이해, 필수 임상 검사치의 이해 정리
4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AP 노트 작성/환자 약력 평가 실습 발표 : 59p case 조별 무작위 발표
5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정보문헌 이용 및 Monograph 제작 발표
6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정보제공 실습: 의약정보 관리와 정보 제공
7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조제 실습 : 처방검토 및 단위 조제 슬기 실습
8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조제 실습 : 장비 사용법 숙지 및 산제조제 : 정제(ATC, 45포, 수동포장기), 산제, 시럽
9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조제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 : 가상 처방전, 역할분담 • 방법 : 교수가 설명 한 뒤 학생들이 조를 나누어 실습 • 처방검토-조제준비-조제-감사-투약준비
10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unication 및 복약지도 실무 실습 : roll play를 통한 실습 / Case report
11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사제, 무균조제 실습 1일차 • 동영상 시청 • 의료기관 주사제 무균조제 슬기의 이해 및 실습
12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사제, 무균조제 실습 2일차
13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안전관리 실습
14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관련 문제 해결 방법 숙지
15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평

6) 실습복장

전문직다운 품모가 느껴지는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과 백색의 lab coat 착용
반바지, 파인 옷, 샌들, 슬리퍼, 모자 등은 부적절
특히 살이 드러나는 복장은 수행자 보호를 위해 부적절

7) 안전 사고 예방

감전, 주사침 찔림 사고 등에 주의
실습장으로 음식물 반입은 금지
실습장내 비품, 소모품,약품, 시약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실습장내 비품, 소모품,약품, 시약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안전한 자재, 물류관리도 약사 업무중의 하나임)

8) 실습장관리 및 유지

실습장은 실제 환자의 약물을 다루는 약국이라고 생각하고 청결하게 관리 한다.
실습 전에 실습실을 스스로 정리정돈 한 후 실습에 임한다.
실습 후 학생들은 자신의 실습장을 정리, 정돈 및 청결을 유지 한다.

3. 필수실무실습과 심화실무실습

1) 삼육대학 약학대학은 약학대학 실무실습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학생 배정은 학생배치 매뉴얼에 따라 운영한다.

2) 학생 실무실습배치 매뉴얼

- ① 실무실습가능 협력기관 협약체결 또는 실무실습 약정협의를 한다.
- ② 매년 1학기 종료 후 분야별로 익년도 실무실습이 가능한 기간, 인원을 파악한다.
- ③ 실무실습 분야는 병원, 지역약국, 제약회사, 공직 등이며 필수실무실습은 전분야 의무이수이며 심화실무실습은 특정분야를 선택적으로 이수 하며 학생의 요구 및 실습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분야를 추가 이수 할 수 있다.
- ④ 학생 설문을 통해 실무실습 수요를 조사한다.
- ⑤ 실무실습배치는 학생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 ⑥ 실무실습배치는 원칙적으로 매년 11월경에 이루어져 배정안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실무실습을 수행한다.

학부 교육과정 연계도

6/2					심화실무실습 I~IV 약학총론 약무관련법규 및 윤리
6/1					필수실무실습 I~VII
5/2	심리학개론	조제학 제약공학 제약산업학 천연물치료학	신약개발방법론	약물치료학Ⅲ 약물치료학Ⅳ 약물치료학Ⅴ	기초실무실습
5/1					의약품제조관리학 임상약동학 약국관리학 약무와 보건의료체계
4/2					약학실험Ⅴ
4/1	채플	의약품질과학 약제학Ⅱ 의약품제조학Ⅱ 약물송달학 방사선의약품학	감염치료학 임상면역학	병태생리학Ⅱ 약물학Ⅱ 임상화학 중독약리학	약학실험Ⅲ 약학실험Ⅳ
3/2	채플	기독교이해Ⅱ	약제학Ⅰ 의약품제조학Ⅰ 생약학Ⅱ 약학통계	예방약학Ⅱ 면역학 약물유전학	병태생리학Ⅰ 약물학Ⅰ EBP 방법론
3/2	채플	기독교이해Ⅱ	약품분석학Ⅱ 생약학Ⅰ 유기약화학 향장품학	예방약학Ⅰ 약품생화학Ⅱ 약품미생물학Ⅱ	해부생리학Ⅱ 신경과학
3/1	채플	기독교이해Ⅰ	물리학 약품분석학Ⅰ 약용식물학	약품생화학Ⅰ 약품미생물학Ⅰ 내분비학 분자생물학	해부생리학Ⅰ
약학대학 인재상 (핵심가치)	책임감과 윤리관을 갖춘 의식있는 약학 인재 (자기주도, 소통과 협력)		미래 창의적 약학연구자 (학문의 우수성, 창의적 연구, 신약개발)		봉사를 실천하는 환자중심의 약사 (환자중심 약료, 사회적 책무와 나눔실천, 보건증진)
삼육대학 교육 목표	미션(M) 정직한 교양인		비전(V) 창의적 지식인		열정(P) 실천적 봉사인

졸업학점

CREDITS FOR GRADUATION

교양과정 필수/선택	전공과정		졸업학점
	단일전공 복수전공	필수/선택	
4		161	165

※ 수강신청 시 주의 사항

1. '선수' 표시 과목은 6학년 필수 및 심화 실무실습을 하기 위한 선수과목으로 반드시 **실무실습 이전(5학년 2학기까지)에 이수해야 함**
2. 약학과 특성 상(내용적 연계, 실무실습일정, 국시일정) 두 학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예 약제학 I - 약제학 II)을 역순으로 수강 할 수 없음

전공교육과정

전공과목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비고(영역)
전공필수	감염치료학	3	선수
전공필수	기초실무실습	2	선수
전공필수	독성학	3	선수
전공필수	면역학	3	선수
전공필수	물리약학	3	선수
전공필수	병태생리학 I	3	선수
전공필수	병태생리학 II	2	선수
전공필수	생약학 I	2	선수
전공필수	생약학 II	3	선수
전공필수	생물약제학	2	선수
전공필수	심화실무실습 I	3	
전공필수	심화실무실습 II	3	
전공필수	심화실무실습 III	3	
전공필수	심화실무실습 IV	3	
전공필수	심화실무실습 V	3	
전공필수	약국관리학	2	선수
전공필수	약과보건의료체계 I	3	선수
전공필수	사회약학	3	선수
전공필수	약물치료학 I	3	선수
전공필수	약물치료학 II	3	선수
전공필수	약물치료학 III	3	선수
전공필수	약물치료학 IV	3	선수
전공필수	약물치료학 V	2	선수
전공필수	약물학 I	2	선수
전공필수	약물학 II	3	선수
전공필수	의약품제조관리학	2	선수
전공필수	약제학 I	3	선수
전공필수	약제학 II	2	선수
전공필수	약품미생물학	3	선수
전공필수	감염미생물학	2	선수
전공필수	약품분석학 I	3	선수
전공필수	약품분석학 II	2	선수
전공필수	약품생화학 I	2	선수
전공필수	약품생화학 II	3	선수
전공필수	약학실험 I (약품분석학, 물리약학)	1	선수
전공필수	약학실험 II (미생물학, 생화학)	1	선수
전공필수	약학실험 III (의약품합성학, 약제학)	1	선수
전공필수	약학실험 IV (생약학, 예방약학)	1	선수
전공필수	약학실험 V (병태생리학, 약물학)	1	선수
전공필수	예방약학 I	3	선수
전공필수	예방약학 II	2	선수
전공필수	유기약화학	3	선수
전공필수	의약품합성학 I	2	선수
전공필수	의약품합성학 II	3	선수
전공필수	의약품품질과학	3	선수
전공필수	의약화학	3	선수
전공필수	조제학	3	선수

전공과목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비고(영역)
전공필수	필수실무실습 I	3	
전공필수	필수실무실습 II	3	
전공필수	필수실무실습 III	2	
전공필수	필수실무실습 IV	2	
전공필수	필수실무실습 V	2	
전공필수	필수실무실습 VI	3	
전공필수	해부생리학 I	2	선수
전공필수	해부생리학 II	3	선수
전공필수	약학총론	P	

전공과목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비고(영역)
전공선택	EBP방법론	3	
전공선택	건강기능식품학	2	
전공선택	내분비학	2	
전공선택	방사선의약품학	2	
전공선택	본초학	2	
전공선택	분자생물학	2	
전공선택	신경과학	3	
전공선택	신약개발방법론	2	
전공선택	심리학개론	3	
전공선택	보건의료체계와 약무행정	2	
전공선택	약물경제성평가의 이해	2	
전공선택	약물역학의 이해	2	
전공선택	약물송달학	2	
전공선택	약물유전학	2	
전공선택	약용식물학	2	
전공선택	약학통계	2	
전공선택	의약품정보학	2	
전공선택	임상면역학	2	
전공선택	임상약동학	2	
전공선택	임상화학	2	
전공선택	제약공학	2	
전공선택	제약산업학	2	
전공선택	중독약리학	3	
전공선택	방제학	2	
전공선택	천연물화학	2	
전공선택	한약학개론	2	
전공선택	향장품학	2	

전공과목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비고(영역)
교양필수	기독교 이해 I	2	3학년 1학기
교양필수	기독교 이해 II	2	3학년 2학기
교양필수	채플	P	3학년 1학기
교양필수	채플	P	3학년 2학기
교양필수	채플	P	4학년 1학기

*선수 : 6학년 필수 및 심화 실무실습을 이수하기 위한 선수과목임

학년별 교육과정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학점	시간		이수권장 복수전공	비고	
					이론	실습			
3	1	교필	채플	P					
	1	교필	기독교 이해 I	2	2				
	1	전필	해부생리학 I	2	3			선수	
	1	전필	약품분석학 I	3	3			선수	
	1	전필	약품미생물학	3	3			선수	
	1	전필	약품생화학 I	2	3			선수	
	1	전필	물리약학	3	3			선수	
	1	전필	약학실험 I (약품분석학, 물리약학)	1		4		선수	
	1	전선	한약학개론	2	2				
	1	전선	내분비학	2	3				
	1	전선	약용식물학	2	3				
	1	전선	분자생물학	2	3				
	1	전선	보건의료체계와 약무행정	2	2				
	1학기 소계				26	30	4		
	2	교필	채플	P					
	2	교필	기독교이해 II	2	2				
	2	전필	해부생리학 II	3	3			선수	
	2	전필	약품분석학 II	2	3			선수	
	2	전필	감염미생물학	2	3			선수	
	2	전필	약품생화학 II	3	3			선수	
	2	전필	생약학 I	2	3			선수	
	2	전필	약학실험 II(미생물학, 생화학)	1		4		선수	
	2	전필	예방약학 I	3	3			선수	
	2	전필	유기약화학	3	3			선수	
	2	전선	건강기능식품학	2	3				
	2	전선	향장품학	2	2				
	2	전선	신경과학	3	3				
	2학기 소계				28	31	4		

*선수 : 6학년 필수 및 심화 실무실습을 이수하기 위한 선수과목임

학년별 교육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학점	시간		이수권장 복수전공	비고	
					이론	실습			
4	1	교필	채플	P					
	1	전필	병태생리학 I	3	3			선수	
	1	전필	생약학 II	3	3			선수	
	1	전필	약물학 I	2	3			선수	
	1	전필	약제학 I	3	3			선수	
	1	전필	예방약학 II	2	3			선수	
	1	전필	의약품합성학 I	2	3			선수	
	1	전필	면역학	3	3			선수	
	1	전필	약학실험 III(의약품합성학,약제학)	1		4		선수	
	1	전필	약학실험 IV(생약학,예방약학)	1		4		선수	
	1	전선	약학통계	2	2				
	1	전선	약물유전학	2	2				
	1	전선	EBP방법론	3	3				
	1	전선	약물역학의 이해	2	3				
	1학기 소계				29	31	8		
	2	전필	병태생리학II	2	3			선수	
	2	전필	약물학II	3	3			선수	
	2	전필	약제학II	2	3			선수	
	2	전필	의약품합성학II	3	3			선수	
	2	전필	약국관리학	2	2			선수	
	2	전필	약학실험V(병태생리학,약물학)	1		4		선수	
	2	전필	의약품품질과학	3	3			선수	
	2	전선	의약품정보학	2	3				
	2	전선	약물송달학	2	3				
	2	전선	방사선의약품학	2	2				
	2	전선	임상면역학	2	3				
	2	전선	중독약리학	3	3				
	2학기 소계				27	31	4		

*선수 : 6학년 필수 및 심화 실무실습을 이수하기 위한 선수과목임

학년별 교육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학점	시간		이수권장 복수전공	비고	
					이론	실습			
5	1	전필	독성학	3	3			선수	
	1	전필	감염치료학	3	3			선수	
	1	전필	약물치료학 I	3	3			선수	
	1	전필	약물치료학 II	3	3			선수	
	1	전필	의약화학	3	3			선수	
	1	전필	사회약학	3	3			선수	
	1	전필	생물약제학	2	3			선수	
	1	전선	본초학	2	3				
	1	전선	임상약동학	2	3				
	1	전선	임상화학	2	2				
	1	전선	천연물화학	2	2				
	1	전선	심리학개론	3	3				
	1학기 소계				31	34			
	2	전필	기초실무실습	2		3			선수
	2	전필	약물치료학 III	3	3				선수
	2	전필	약물치료학 IV	3	3				선수
	2	전필	약물치료학 V	2	2				선수
	2	전필	의약품제조관리학	2	2				선수
	2	전필	조제학	3	3				선수
	2	전필	약무관계법규 및 윤리	3	3				선수
	2	전선	신약개발방법론	2	3				
	2	전선	제약공학	2	3				
	2	전선	제약산업학	2	2				
	2	전선	방제학	2	3				
	2	전선	바이오의약품학	2	3				
	2	전선	약물경제성평가의 이해	2	3				
2학기 소계				30	33	3			

*선수 : 6학년 필수 및 심화 실무실습을 이수하기 위한 선수과목임

학년별 교육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학점	시간		이수권장 복수전공	비고
					이론	실습		
6	1	전필	필수실무실습 I	3		3		
	1	전필	필수실무실습 II	3		3		
	1	전필	필수실무실습 III	2		2		
	1	전필	필수실무실습 IV	2		2		
	1	전필	필수실무실습 V	2		2		
	1	전필	심화실무실습 I	P(3)		3		
				1학기 소계	15		15	
	2	전필	필수실무실습 VI	3		3		
	2	전필	심화실무실습 II	P(3)		3		
	2	전필	심화실무실습 III	P(3)		3		
	2	전필	심화실무실습 IV	P(3)		3		
	2	전필	심화실무실습 V	P(3)		3		
	2	전필	약학총론	P(1)	2			
				2학기 소계	16	2	15	

□ 중독연계전공

건강특성화를 특화하고 있는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에 따라 상담심리학과, 보건관리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약학과가 연합하여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과 통합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건강과학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중독심리전공’과 ‘중독재활전공’을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한다.

[중독연계전공 교과목]

분류		중독심리 전공		중독재활 전공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기초 (12학점)	필수 (6학점)	심리학개론	3	심리학개론	3
		신경과학	3	신경과학	3
	선택 (6학점)	예방약학 I	3	약물학 I	3
		사회약학	3	사회약학	3
		병태생리학 I	3	병태생리학 I	3
응용 (24학점)	필수 (15학점)	중독의 이해	3	중독약리학	3
		중독상담	3	중독치료 및 재활	3
		중독평가	3	중독평가	3
		현장실습(필수실무실습 I)	3	현장실습(필수실무실습 I)	3
		EBP방법론	3	EBP방법론	3
	선택 (9학점)	중독약리학	3	독성학	3
		약물치료학 I	3	약물치료학 I	3
		예방약학 II	3	약물치료학IV	3

참고) “중독의 이해, 중독상담, 중독평가, 중독약리학, 중독치료 및 재활”은 매 학기와 매 계절학기에 개설되며, 나머지 교과목은 학과 교과과정에 맞추어 각각 개설됨

교과목 소개

감염치료학

항생제의 합성, 응용, 부작용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해부생리학 I,II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I,II)

인체의 구조, 형태 및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며 신체 각 부분들이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그 지식을 이용하여 질병의 본체를 이해하여 인간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약품분석학 I,II (Pharmaceutical Analysis I,II)

물질의 구성성분을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분리, 확인 및 그 정량법에 대한 고전적 이론과 나아가 크로마토그래피법과 분광분석법의 원리와 응용을 익혀서 원료 의약품 및 의약품제제의 분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응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약품미생물학 (Pharmaceutical Microbiology)

미생물학의 기초 지식을 습득시켜 약품 미생물학 및 첨단 과학분야인 유전공학으로의 응용과정을 강의한다.

감염미생물학 (Infectious Disease and Microbiology)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발생 질환의 특징, 치료 및 예방법의 지식을 학습한다.

약품생화학 I,II (Pharmaceutical Biochemistry I,II)

화학의 지식과 방법을 사용하여 생명체를 이해한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핵산 등의 생체물질의 구조와 기능을 강의하고 생체내 물질대사, 효소작용과 대사물과의 관계 및 대사조절을 강의한다.

물리약학 (Physical Pharmacy)

약학 분야에서 필수적인 물리화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의하여 모든 약학의 응용과목을 이론적으로 해석 발전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강의한다.

약학실험 I (Lab in Pharmacy I - Pharmaceutical Analysis, Physical Pharmacy)

약품분석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혼합 화합물 또는 의약품의 성분 분리와 확인 및 함량분석 실험을 실시하고, 또한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물질 이해에 필요한 실험기술을 실시하여 물리약학의 응용분야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약학실험 II (Lab in Pharmacy II-Pharmaceutical Microbiology, Pharmaceutical Biochemistry)

미생물에 관한 제반 기초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시키기 위해서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미생물을 배양하고 형태학적 및 생화학적 성장을 실험을 통해 이해하며, 생화학의 기초적인 실험기술을 습득시켜 생화학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서 약물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화학적 면에 역점을 두고 실습한다.

약학실험 III (Lab in Pharmacy III - Drug synthesis, Pharmaceutics)

의약품으로 쓰이는 주요 유기, 무기 화합물을 제조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약효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약제학 실험은 의약품의 조제 및 제제의 제법 및 실험법에 대해 실습한다.

약학실험 IV (Lab in Pharmacy IV - Pharmacognosy, Preventive Pharmacy)

생약의 외부형태적 식별, 내부구조의 현미경적 감별, 화학반응에 의한 확인 및 유효 성분의 추출, 분리 동정 정량 등의 방법을 익혀 생약품질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활성물질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를 양성한다. 예방약학 및 보건위생에 관련되는 식품, 수질, 기능성 식품 공기 등의 이화학적, 세균학적 검사법 실험을 통하여 위생적 적부를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실습한다.

약학실험 V (Lab in Pharmacy V - Anatomy & Physiology, Pharmacology)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실험을 통하여 이해하며 염증, 대사이상, 내분비이상 등 질환으로 야기된 병리상태에 대해 실험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 각종 약물의 생체 반응을 실험동물과 배양된 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함으로써 약

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등의 약물의 체내 동태에 대한 실험 방법과 약물의 효능 검색 및 독성실험에 대한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생약학 I,II (Pharmacognosy I,II)

인류의 질병 치료를 위해 유사 이래 그 사용이 전해져 내려오는 생약에 관한 개념 확립과 역사에 대해 학습하며 생약에서 주요한 활성을 나타내는 2차대사산물의 종류와 개별 화합물들의 식물 내 생합성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신의약품의 소재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생약의 학명 및 성상, 그리고 주요 함유성분과 그 약리활성에 관한 내용을 각론의 내용으로 심화학습한다.

유기약화학 (Organic Medicinal Chemistry)

약학의 기초과목으로 유기화합물의 구조 및 성질과 반응 등을 공부한다. 의약품합성화학과 의약화학, 산업약학을 위한 기초가 된다.

한약학개론 (Introduction to Herbal Medicine)

생약의 일부인 한약을 과학적으로 다루기 위해 한의약학의 역사 및 그 기초이론을 현대 의약학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하는 기본과목이다.

내분비학 (Endocrinology)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생리활성물질들의 성질, 생성, 분포, 대사, 배설, 생리학적 작용과 그 기전 및 관련 물질들에 대해 강의를 한다.

건강기능 식품학 (Health Functional Food Science)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건강 기능성 식품의 정의와 법적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 유통되는 건강 식품류의 유형을 분류하여 개개 식품을 구체적으로 강의한다.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세포의 구성성분을 분자수준에서 조사하고 각 구성성분들, 특히 단백질과 핵산의 생합성에 대해 연구하며 유전자의 구조와 복제, 발현, 조절, 수복 및 재조합 등에 대해 살펴본다.

향장품학 (Cosmetic Chemistry)

화장품, 향수, 피부.머리카락.몸 관리용품들의 제조 및 개발과정, 보관 및 유통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병태생리학 I,II (Pathophysiology I,II)

질병의 원인, 발병기전, 형태학적 및 기능적 변화, 임상증상 및 합병증을 연구하여 질병의 본체를 인식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약물학 I,II (Pharmacology I,II)

질병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의 생체 내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등 약물의 체내 동태와 생체에 대한 약물의 작용기전, 효능, 독성 및 임상응용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약제학 I,II (Pharmaceutics I,II)

약학의 전반지식을 응용하여 의약품의 조제 및 제제에 대한 조작법과 이에 관계되는 이론을 강의한다.

예방약학 I,II (Preventive Pharmacy & Public Health I,II)

건강 기능 식품을 비롯한 일반 식품, 식품첨가물 및 잔류물이 인체 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강의한다.

의약품합성학 I,II (Medicinal and Pharmaceutical Chemistry I,II)

유기와 무기약품합성의 이론과 응용을 강의하며 유기와 무기의약품개발에 관한 학문적인 것과 합성전략에 관한 방법을 강의한다. 유기 및 무기의약품을 실제로 합성을 할 때의 문제점 또한 공부하여 합성상의 기술적인 면과 이론적인 것을 비교 토론한다.

면역학 (Immunology)

항체의 구조, 생성, 항원항체반응, 면역유전, 면역응답의 유전자(gene) 등에 대해 강의한다.

약학통계 (Statistics for Pharmacy)

통계학의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표본분포, 구간추정, 검정, 단순회귀분석, 범주형 자료의 분석 등을 학습한다.

약물유전체학 (Pharmacogenomics)

약물유전체학은 치료 반응에 있어서 유전적 차이에 기초한 개별적 차이를 연구하는 과학적 분야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약물의 대사, 분포 및 약리작용에 미치는 개인적인 차이와 맞춤형 치료에 기여하는 약물유전체학의 역할을 공부한다.

임상화학 (Clinical Chemistry)

질병의 진단 및 진행정도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혈액 생화학적 검사, 뇨 검사의 측정 항목 및 그 수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강의함으로써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의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임상약동학 (Clinical Pharmacokinetics)

약물의 체내동태에 관한 이론을 이해하여 임상영역에서 적절한 약물요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약물의 체내 동태, 즉 흡수(absorption), 분포 (distribution), 대사(metabolism) 및 배설 (excretion)에 대한 이론을 숙지한다.

약물송달학 (Principles of Drug Delivery System)

몸 안으로 약을 송달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물건이라는 형태로 구체화하여 약물을 정밀하게 투여하고자 하는 Drug Delivery System(DDS)이 지닌 중요한 기능인 생 체내 장벽 투과성 제어, 약물방출의 제어, 표적지향 등을 공부한다.

방사선의약품학 (Radiopharmaceutics)

원자핵의 구조, 방사선의 성질, 방사선 동위원소 및 진단과 치료목적의 방사성의약품을 다룬다.

약물치료학 I~IV (Pharmacotherapy I~IV)

약사의 직능인 의약품 사용의 전 과정을 관장해 최적의 약물사용으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약물사용의 합리성을 기하는데 집중되고 있으며,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임상지식과 약물치료법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질환별 병리기전과 진단기법, 약물치료 등을 숙지하고자 한다.

독성학 (Toxicology)

독성물질의 기원, 물리화학적 성질, 생체에 대한 작용과 그 기전,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중독의 예방 및 해독 작용, 약물의 위해작용과 관련된 임상에서의 주의 사항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의약화학 (Medicinal Chemistry)

의약화학자들은 약물이 생체 내에서 나타내는 약리효과를 분자적 차원에서 규명하고, 화학구조와 생리작용 간의 상관관계를 정립하여 화합물을 분자적 수준에서 설계하고 합성한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의 생리효과를 검색한다. 따라서 의약화학은 의약품합성화학을 바탕으로 약리학 효소학, 생화학 등 인접한 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는 학제간 융합학문이라 볼 수 있다.

약국관리학 (Pharmacy Management)

주로 약국 경영에 대하여 강의한다. 입지조건, 내부구조, 의약품 저장, 진열, 의약품의 사입과 판매, 광고, 경영전략, 장부기재, 회계, 세무관리, 종업원 관리 등을 강의하여 수입을 증대함과 동시에 공익적 사회 기여인으로 이바지하게 한다.

기초실무실습 (Introductory Pharmacy Practice Experience)

필수실무실습 및 심화실무실습에 들어가기 전 우수하고 자립심이 있는 실습자로서 환자치료의 책임감과 전문성

을 숙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약사로서의 기본 소양식습, 기본임상실습, 약제기본 조제실습, 전문지식 활용 실습, 실무실습 계획 세우기 등을 익히고자 한다.

의약품제조관리학 (Pharmacopoeia)

의약품품질관리를 위한 공정서인 대한약전의 원리와 세부기준규격 등을 소개하고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기준 및 분석방법 등을 학습한다.

약물관계법규 및 윤리 (Pharmaceutical Regulation and Ethics)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마약, 향정신성 약물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와 기타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한 법령을 이해시켜 약사로서 업무상 과오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준법을 통해서 밝고 명량한 사회의 건강 수호자로서 이바지하게 한다.

조제학 (Dispensing Pharmacy)

조제 기초 및 임상약제학, 의약품, 약물의 특성 및 효과 등을 폭넓게 공부한다.

의약품정보학 (Drug Information)

약물치료과정에서 의사의 약 처방 작성을 도우며, 환자를 약물위해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료용 약물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특정상황에 처한 특정인에게 적합한 정도로 가공하여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엮었다.

의약품품질과학 (Quality Control of Drug)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우수약품제조기준(GMP)과 밸리데이션 등의 이론과 기준 등이 소개되고 이를 위한 시험관리, 안정성시험 및 품질평가방법, 정보관리 및 자료처리의 기법 등을 학습한다.

생물약제학 (Biopharmaceutics)

약물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생물학적 효과와의 관계를 공부하는 약제학의 한 분야이다. 생체막의 기능부터 약물의 흡수와 제어, 약물의 분포, 대사, 배설 등 생물 약제학 전반을 강의한다.

천연물화학 (Natural Product Chemistry)

동, 식물, 광물등 천연물의 소재와 이들 중 생리활성 물질의 약리작용 및 의약품으로의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본초학 (Medicinal Herbology)

한약(한의약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물 또는 가공된 약재를 혼합 조제하여 투여되는 약물)을 구성하는 개별 약물인 본초의 기원, 채취, 포제, 성미, 효능 주치 및 응용방법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약과 보건의료체계 I,II (Pharmacy and Health System I,II)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 및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회현상과 인간의 행태에 대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이론과 해석을 제시한다. 약을 둘러싼 법과 제도, 경제, 경영, 사회, 문화적 측면을 탐구함으로써 사회체계 내에서 의약품과 약사의 역할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의료체계와 약무행정(Healthcare-system and Pharmaceutical Administration)

사회약학은 의약품의 전 주기에 관련된 사회적 현상과 영향을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행태학, 보건학 등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 과목은 사회약학의 여러 영역 중 보건의료체계 및 약무관련 정책에 대해 학습한다

제약공학 (Pharmaceutical Engineering)

제약공학이란 약제학의 기본 지식을 배경으로 공학과 약학의 복합적인 학문으로 효율적인 신약개발, 제제공정, 제약마케팅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바이오횰약품학 (Biopharmaceutical Drug)

바이오횰약품이란 크게 단백질의약품, 항체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백신 등으로 나누며, 주로 항암제, 호르몬, 혈액제제, 성장인자, 치료용 항체 등을 포함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의약품이다. 본 과목에서는 바이오횰약품의 종류와 특징, 전반적인 개발방법 및 제조기술,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횰약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고자 한다.

방제학 (Prescription of Herbal Medicines)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여 治法을 확실하게 정한 후 그 治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만든 처방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의서적에 근거한 방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개발되고 창제된 이론에 의하여 질병치료에 적용되었던 경험적 처방까지도 포함시켜 연구하는 학과목이다.

제약산업학 (Industrial Pharmaceutics)

제약산업학이란 신약개발, 약효시험, 약물송달 등 산업약학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과과정이다.

신약개발방법론 (Methodology for New Drug Development)

신약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약후보물질 발굴에서부터 제약학적 개발단계 및 독성학 등의 전임상 시험 및 임상시험에 있어 임상개발의 단계, 계획, 수행, 및 결과 분석과 보고, 모니터링, 윤리적 이슈, 규제과학 등의 이론 및 방법론을 강의한다.

필수실무실습 I~VII (Compulsory Pharmacy Experimental Practice I~VII)

필수실무실습은 이론적인 약학지식을 습득한 학생이 의료현장에서 약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실무실습을 수행하도록 한다. 실습현장은 지역약국, 병원약국, 제약회사,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이다.

심화실무실습 I~IV (Advanced Pharmacy Experimental Practice I~IV)

필수실무실습을 이수한 학생에게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전문임상실무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specialty 분야에서 학생의 특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를 학생이 선택하여 실습할 수 있도록 한다.

약학총론 (General Pharmacy)

약학의 필수과목들을 개괄적으로 review 하고 상호관계에 대해 강의한다.

중독약리학 (Pharmacology of abusive drug or Addiction pharmacology)

신경과학과 인체 생리에 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신경계에 작용하는 남용 약물 즉, 의존성 약물들의 체내동태와 인체에 대한 약물의 작용기전, 효능 및 독성 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약물의 올바른 사용, 남용 약물의 사용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 수행 및 교육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신경과학 (Neuroscience)

뇌를 포함한 모든 신경계(중추,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신경계의 구조, 기능, 진화, 발생, 유전학, 생화학,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 등을 광범위하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목이다

EBP 방법론 (Methodology of Evidence-Based Practice)

과학적 임상연구를 통해 얻은 증거를 토대로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진단과 중재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심리학개론 (Introduction of Psychology)

인간 행동의 발달, 성격, 정서, 인지 작용, 생리, 신경 작용, 적응, 학습, 정신 건강, 인간관계 등 심리학 전반에 대한 개론적 지식을 습득한다.

약물경제성평가의 이해 (Basic Pharmacoeconomics)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적정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약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강좌는 의약품의 효과 대비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과 방법을 다루는 과목으로,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 및 비용최소화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의 이론을 포함한다. 또한 성과 자료 분석을 위한 임상문헌의 고찰

및 분석, 비용 산출을 위한 비용자료 구득 및 분석 방법, 할인율,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민감도 분석을 이해하도록 한다.

약물역학의 이해 (Basic Pharmacoepidemiology)

보건분야에서 응용되는 역학의 개념, 역할, 범위 및 방법론 등 역학의 기본개념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약물역학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의약품 사용관련 문제의 발생과 이와 연관된 원인간의 인과성을 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평가에서 역학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학습한다.

연계전공 졸업인증 (Qualification of Graduation)

중독 연계전공의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임상실기, 중독연구수행, 봉사, 졸업시험 영역에서 졸업인증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